

지적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

□ 세부유형 : 선천적 지적장애

구비서류	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
1.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	- 지능지수 및 사회성숙지수, 진단소견 기재
2. 검사결과지	- 임상심리평가보고서 : 지능검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 기재 ※ 상기 표준화된 검사 결과로 최종적인 장애정도를 판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적응지수나 발달지수가 명시된 검사결과지(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, 덴버발달검사,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, 바인랜드 사회성숙도 검사 등) 1개 이상 제출 ※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 득점으로 정확한 지능지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, 비언어적 시지각구성 능력검사[시각-운동통합발달검사(VMI), 또는 벤더 계슈탈트검사(BGT)]를 추가 시행한 후 추정 지능지수가 기재된 검사 결과지 제출
3. 진료기록지	- 초진 기록(지적장애 진단 시) 및 최근 6개월간 진료기록지 - 선천성 지적장애로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학적부로 대체 가능
☞ 추가 안내사항 * 임상심리평가보고서 - 지능검사 및 사회성숙도 검사 등을 시행한 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된 검사결과지 ※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·제출하셔야 합니다.	
[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]	
-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, 신경과, 재활의학과, 소아청소년과(신경분과) 전문의	

최저 장애정도 기준

-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

지적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

□ 세부유형 : 후천적 지적장애 ※ 노인성 치매는 장애 불인정

구비서류	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
1.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	- 후천적 지적장애 발생원인, 지능지수, 진단소견 기재
2. 검사결과지	- 임상심리평가보고서 : 지능검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 기재 ※ 뇌손상, 뇌질환 등에 의해 지능이 저하된 경우는 MRI(자기공명영상촬영), CT(전산화단층촬영) 등의 뇌영상 자료 추가 제출
3. 진료기록지	- 경과기록지 :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간의 기록 모두 제출 [입원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입퇴원요약지로 제출] • 발병 당시 입·퇴원요약지와 최근 6개월간의 경과기록지 (인지치료 및 인지기능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포함) ※ 지적장애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,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 자료 모두 제출
☞ 추가 안내사항	
<p>* 임상심리평가보고서</p> <p>- 지능검사 및 사회성숙도 검사를 시행한 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된 검사결과지</p> <p>※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·제출하셔야 합니다.</p>	
[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]	
-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, 신경과, 재활의학과, 소아청소년과(신경분과) 전문의	

최저 장애정도 기준

-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